#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1695

제출연월일: 2024. 7. 12.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제2호 중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종전의 제6항) 중 "한다) 및"을 "한다),"로, "한다)가"를 "한다) 및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5호(종전의 제4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제

1호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제31조제1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해당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 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8조 각 호"를 "제28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7조제5항" 을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 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 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록을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제36조의4 후단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제51조제2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5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 명령 제5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제5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 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 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제58조제1항제3호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2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
	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
	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
	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
	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	5
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u>먹는해양심층수수입</u>	<u>먹는해양심층수수입</u>
<u>업</u>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u> 판매업</u>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	
업을 말한다.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제13조(면허의 제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	
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	2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u>종료</u>	끝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 아니한 자

3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되지 아니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27조(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 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시 ·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 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 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 ⑤ (생략)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없다.
  - 1. (생략)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

저리기산을 발한나)이 끝난 날
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u>⑧</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⑨</u>
<u>한다)</u> ,
<u>한다) 및 제5항에</u>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
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
<u>⑩</u> 제9항
세28조(허가 등의 제한)
<u>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5</u>
<u>항</u> 등록 또는 신고를
1 /취되게 귀쇼\
1. (현행과 같음)
2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u>종료</u>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 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 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 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 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한다)된 날부터 2년이 <u>지나지</u> 아니한 자

<신 설>

<u>거</u>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u>경</u>	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
	지 아니한			
	_ , , , _	<u>, , , , , , , , , , , , , , , , , , , </u>		
2				
3				
			<u>z</u>	시나기
저	에 같은 종			
		11 - 1	0 0 0	
	<u>자</u>	1 -1	11 -11 4	=
4. 7	#32조에 ¤	다라 말	<u> </u>	<u>당심증</u>
<u>수</u>	유통전문	판매약	업의 연	<u> </u>
<u>0</u> ]	폐쇄(제1	호에	해당하	여 영
<u>업</u>	장이 폐쇄	된 경	우는 저	네외한
다	)된 날부터	2년 여	이 지나	·기전
	같은 종류			
<del>기</del> 자		1 0	<u>пс</u>	<u>, , , , , , , , , , , , , , , , , , , </u>
	•		레 4 구	
<u>5</u> . –			세4오-	
31조	(영업의 중	승계) (	① <u>먹</u> 는	-해양
심층	수제조업	자, 뜨	i 는해 %	냥심층
<u>수수</u>	-입업자 또	드는 말	ị는해 <u>영</u>	냥심층

- 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 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 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 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먹는</u> 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 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②
<u>먹는해양심층</u>
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
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
문판매업의 시설·설비의 전부
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
<b></b>
③ <u>먹는</u>
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
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
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허가 능의 취소 능) ① ㅅ	١
· 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	<u>_</u>
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	]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	}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	E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ㅇ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1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저	1
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	E
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u>제28조 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 2. · 3. (생략)
- 4. <u>제27조제5항</u>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5. ~ 11. (생 략)

<신 설>

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u>및 제5호</u>
가.・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u>제27조제8항</u>
5. ~ 11.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
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 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 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때
- 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 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 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 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 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 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 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

③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
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
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록을 취소하고, 먹는해양심
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
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
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을 폐쇄할
<u>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36조의4(준용규정)
<u>.</u>

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 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 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 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 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 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 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 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 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 로, <u>"제27조제5항"</u>은 "제36조의2 제3항"으로 본다.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
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u>"제27조제8항"</u>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
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 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생략)

③ • ④ (생 략)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u>먹는해양</u> 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 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 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 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 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하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 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 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을 한 경우
-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 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을 한 경우
- 2.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2			<u>먹는</u>	해	양
심층수제조	업자,	먹는	-해양	심	층
수수입업자	또는	먹는	·해양	심.	층
수 유통전	 문판매'	 업자-			
		<u>н т</u>			
				-	

#### ③ (생략)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 3. (생략)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8. (생략)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청문)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장의 폐쇄 명령
3.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
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제27조제5항에 따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u>자</u>
5. ~ 8.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	케	처	한다.			

<신 설>

<u>1</u>. (생 략) <u><신 설></u>

2. ~ 6. (생략)

-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u>제27조제6항</u> 또는 제36조의2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 6. (생략)

② (생략)

<ol> <li>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li> </ol>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u>한 자</u>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
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u>4.</u> ~ <u>8</u> . (현행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세58조(과태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7조제9항</u>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